[2023-1] ○○○○○ 주식회사 이의신청 요약 ['23. 1. 4. 접수]

사실 관계

○ xxxx.xx.xx. 물적분할*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설립

*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%를 보유하는 방식

○ xxxx.xx.xx. 분할신설법인, 분할법인의 자산을 승계취득하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7조의2 제3항 제2호**의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 신고·납부

**「법인세법」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(물적분할)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

○ xxxx.xx.xx. 분할신설법인이 신청법인에 합병·해산되며 추징사유***가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청법인이 신고·납부

***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

○ xxxx.xx.xx. 신청법인, 경정청구 → 처분청 경정불가통지

○ xxxx.xx.xx. 신청법인, 이의신청 제기

쟁점 사항

○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유상취득 세율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

신청법인 주장

○ 자산 승계 관점에서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다르지 않은 점 등 유상취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, 물적분할로 승계된 자산은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시켜야 한다.

종합판단 : 기 각

○ 「지방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"무상취득"이란 금전,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,

○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(조심2019지1769, 2020.2.13., 조심2019지1939, 2019.11.21.),

○ 「지방세법」 제10조에 1항에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에서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로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

○ 처분청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승계취득을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.